

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년 2월 16일
행정재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년 2월 6일, 고성미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3년 2월 6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4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최 중
제1차 행정재경위원회(2023년 2월 16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고성미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도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목적, 용어의 정의 및 적용 범위를 규정함(안 제1조에서 제3조)
- 부실공사 방지대책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4조)
- 공사감독 및 현장점검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5조에서 제6조)
- 부실신고센터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)
- 부실공사 신고, 처리, 측정 및 심의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에서 제10조)
- 부실시공 신고 포상금 지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1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박병규

나. 검토의견

① 제정 배경

- 현재 건설공사는 대부분 전자공개 입찰에 따른 낙찰자 결정 방식으로 인해 사전에 우량업체 선발이 어렵고, 부실 시공시 하자보수 등에 따른 행·재정적 손실이 막대함에 따라,
- 구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우수한 건설 품질 확보 및 이용자의 안전과 불편해소를 도모하기 위함

② 주요 사항별 내용

- 본 조례안은 총 12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, 적용범위 등을 정함.
- 안 제4조는 부실공사 방지대책으로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, 품질관리, 부실공사 측정 및 안전관리에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.
- 안 제5조와 제6조는 공사감독이 해당 공사현장에 수시로 출장하여 지도·감독을 철저히 하고, 필요시 관계 전문가를 점검에 참여토록 하여 품질관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.
- 안 제7조는 민원감사담당관에 ‘부실공사 방지 신고센터’를 설치·운영토록 함.
- 안 제8조는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방법과 신고내용을 규정하고, 준공일로부터 1년이 지난 공사에 대한 신고는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정함.
- 안 제9조는 민원감사담당관은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사실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을 수립토록 하고, 공사감독은 부실 여부 증명 및 조치결과를 신고센터에 제출토록 함.
- 안 제10조는 신고된 건설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실 여부를 신속히 측정하되, 필요시 부실공사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그 공사의

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.

- 안 제11조는 공사비 3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고한 사항이 부실시공으로 밝혀지면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.

③ 종합의견

- 본 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인 「건설산업기본법」, 「건설기술진흥법」 등의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, 구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공사현장 점검 및 공사감독을 강화하고 “금천구 부실공사 방지 신고센터”를 운영하는 등 부실공사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건설공사 부실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례 제정이라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